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5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이해식·이소영·김종민

김경만 • 문진석 • 강선우

한병도 · 오영훈 · 인재근

안규백 · 김원이 · 김민철

김철민 · 오영환 · 양향자

장경태 · 윤준병 · 허 영

이수진비・김승원・이수진

김상희 · 진선미 의원

(239])

제안이유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9호의3).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 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추가함(안 제66조의9제1항 제1호의2 신설).
-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70조제1항 제1호의2신설).
- 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난백서 기록사항에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추가함(안 제70조제4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3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로, "사람을"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부분 전단 중 "수습을"을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제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제70조제4항 중 "제60조에"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로, "수습상황 등을"를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u>어린</u>	9의3
<u>이, 노인, 장애인 등</u> 재난에	<u>장애인,</u> 저소득
취약한 <u>사람을</u> 말한다.	<u>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u>
	<u> 요인으로 인하여</u>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사람을</u> .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	①
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u>대응·복구(이하"수습"</u>	<u>예방·대비·대응·복</u>
<u>이라 한다</u>) 등에 관한 사항을	<u> </u>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	
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③
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	

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방호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 2. (생략)

⑤・⑥ (생략)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4
<u>대응·복구(이하 "수</u>
습"이라 한다)를
1.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 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1. (생략)

한다.

<신 설>

- 2. ~ 4. (생 략)
- ② ~ ⑤ (생 략)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 2. ~ 4. (생 략)
- ②·③ (생 략)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6소의9(안전성보의 구숙·활용)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 4. (현행과 같음)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1. (현행과 같음)
,
<u>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u>
및 조치사항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 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인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
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u> </u>
⑤·⑥ (현행과 같음)